

「도시·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시·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(정비계획 수립)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

2. 주요내용

- 조건부 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

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
주택정비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3384, FAX : 044)201-5532